

2017-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 : 2018.01.10.(수)

의 원 수 : 12명

1. 일 시 : 2018.01.17.(수) 07:00~08:30
2. 장 소 : 베어드홀 407호 (회의실)
3. 참석자 : 조문수 의장, 이주완 부의장, 강위경 의원, 김예지 의원, 김지영 의원, 박창희 의원, 송진태 의원, 이석원 의원, 정연보 의원, 전영석 의원, 홍민철 의원 (총 11명)
• 간 사 : 전영철 기획·평가팀장 • 배 석 : 강민구 기획·평가팀 팀원

4. 기 도 : 조문수 의장
5. 전 회의록 처리 : 그대로 받기로 하다 (정연보 의원의 동의, 박창희 의원의 재청과 참석의원 만장일치)
6. 안 건

가. 학칙 개정(안)

- 독립학부인 예술창작학부와 스포츠학부를 인문대학 소속으로 변경

나.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항 신설

7. 회의내용

- 가. 조문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학칙 개정(안)]

- 나. 전영철 간사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다. (조문수 의장) 기존 독립학부 중 스포츠학부와 예술창작학부는 소속 변경이 되고,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기존과 같이 독립학부에 존속하는지에 대해 묻다.

- (전영철 간사) 특성화 전략과 연계된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독립학부로 존속함을 설명하다.

라. (강위경 의원) 스포츠학부와 예술창작학부를 독립학부로 두었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인문대학으로 소속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배경과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전영철 간사) 종래 예술계열 단과대학의 신설 등을 고려하여 독립학부로 편제하고 운영하였으나, 교육서비스와 학과운영의 효율성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 소속 단과대학인 인문대학으로 변경함을 설명하다.

- (이석원 의원) 추후 학제개편 등의 배경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견 개진하다.

마. (박창희 의원) 예술창작학부의 문예창작전공은 인문대학 소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영화예술전공은 학문의 특성상 인문대학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술계열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학과의 소속변경 시 학문의 특성과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바. (정연보 의원) 학과 소속변경, 신설, 폐지 등과 같은 사항은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사. (송진태 의원) 학과소속변경 등이 진행될 시에 초기단계부터 학생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아. (박창희 의원) 2018학년도에 모집되는 신입생들에게는 스포츠학부와 예술창작학부가 독립학부로 안내되어 모집이 진행된 것인지 질의하다.
 - (전영철 간사) 독립학부인 스포츠학부와 예술창작학부의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입학처 등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진행하였음과 모집단위 변경 등 학생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동 의절차가 있음을 설명하다.
- 자. (이주완 의원) 독립학부의 경우 교무위원회에 학부의 의견 반영 및 의결 사항 전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며, 학과소속 변경에 대한 근거가 단순 행정서비스 변경이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전영철 간사) 교무위원회 결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은 교무처 교무팀에서 모든 기관에 안내하고 공개됨을 설명하다.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 차. 전영철 간사가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카. (조문수 의장) 현재 대학평의회 회의 후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하다

8. 심의·의결사항

- 가. [독립학부인 예술창작학부와 스포츠학부를 인문대학으로 소속 변경]에 따른 학칙개정에 대해 이석원 의원 동의, 강위경 의원의 재청과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다만, 학과(부)의 소속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학문분야의 성격, 교육수요자의 입장,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어야함을 평의회 전체 의원의 의견으로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다.
- 나.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6조(규정 개정)에 따라 평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8명이상/11명출석)하였음을 확인하고, 찬반투표결과 출석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하다.

2018년 01월 17일

사회 의 장 조문수
기록 기획·평가 팀원 강민

의 원

이주환

강위경

박창희

이준희

홍민철

이석원

김지영

전영석

송진태

김예지

정연표